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78
----------	-----

2024. 6. 24.(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노금식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4년 5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6월 11일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금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인 복지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체육인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지원금 지급과 중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 절차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자료제공의 요청,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0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필요성

-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체육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0 체육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체육인들의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미래 직업전망도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결국 체육인의 고용 안정성 측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국회에서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체육회와 각 체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체육인의 열악한 복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체육인 복지정책을 지원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제도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 3곳 뿐이며, 체육인 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없음 (표-1 참조).

[표-1] 광역자치단체 체육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5.31.기준)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일
1	경북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2023.05.25.
2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2024.02.16.
3	경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014.03.20.

-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는 상위 근거법인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충청북도 조례안과 대동소이함.

경기도의 조례는 앞의 2개 자치단체와 다소 결이 다르게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임 (표-2 참조).

[표-2] 체육인 복지 관련 조례 3개 비교

(2024.5.31.기준)

구분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이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
조문 수	12개 조문	11개 조문	12개 조문
조례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6조(장학사업)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8조(지원금)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6조(장학사업)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제8조(지원금)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재정지원)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사업평가) 제12조(사무의 위탁)

나. 조례안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 체육인의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상위 근거법인 「체육인 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여 그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3조는’ 체육인 복지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체육인 복지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 제2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안 제3조 제1항’의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태조사 결과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안 제5조’안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1호부터 4호는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조사·연구,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제5호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인 복지 향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안 제6조’는 학생선수 장학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는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특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의료비 등 특별 보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지급과 관련한 기준, 금액, 방법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 됨.
- ‘안 제9조’는 ‘안 제7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 됨.
- ‘안 제10조’는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본 조항의 자료요청으로 과도하고 중복되는 개인 정보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안 제11조’는 체육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가 교육청,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체육인 복지법」(2021.8.10)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2.8.9.)·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본 조례 시행 시 지원 대상이 일부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충청북도 체육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마련과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 체육인 복지 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 원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질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방법·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영 제26조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충청북도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

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나.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주최·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방법·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
5. 납부방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